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가합13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3.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3. 3. 30. 접수 제37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357,705,7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57,705,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는 C의 금전채권자인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2023. 3. 27.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러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나.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는 C의 금전채권자인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을 2023. 9. 25.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러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져 목적물의 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재판장 판사 문현호, 판사 김리사, 판사 김선호

별지

1) 원고는 2024.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1의 나항에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3. 3. 30. 접수 제337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3. 3. 30. 접수 제37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